[별표3]<개정 1987·10·26, 1987·12·31, 1989·10·11>

상 이 등 급 구 분 표

(제14조 관련)

등급	분류번호	신 체 상 이 정 도
1급 1항	1	현저한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, 광폭한 행위 및 거의식증 등으로 자제력이 완전 상실되어 항상 감시상태에서 보호를 요하는 자
	2	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인한 기능장애로 항상 침상생활을 요하는 자
	3	양쪽 팔다리(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이상)가 절단되거나 척추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마비등으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
	4	뇌골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이 전폐된자로서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된 자 또는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
	5	1급2항 또는 3항에 해당하는 상이부위가 2개이상인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
1급 2항	1	두눈이 실명되어 광각이 없는 자
	2	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사용이 전폐되고 배변,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
	3	1급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중 3급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급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자
1급 3항	1	두 눈이 실명된 자(광각이 있는 자)
	3	현저한 정신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
	4	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
	7	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 다리가 상실 또는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
	8	두팔이 손목 관절이상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
	9	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
	10	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
	11	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
	63	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자
	66	하반신 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
	68	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이상 각각 상실된 자
	201	2개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1급3항에 해당되는 자
2급	97	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
	98	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로서 보행과 언어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
	99	한 팔이 어깨관절이상 상실된 자
	14	두 다리가 무릎관절이하 상실된 자
	100	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.06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.02이하인 자
	101	정신이상으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으며 취업이 전혀

		불가능한 자
	102	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된 자
	103	흉복부 장기의 부상후유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난치성의 기능장애가 초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자
	104	한 다리가 고관절이상 상실된 자
	105	한 팔이나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이나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되고 다른 팔과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79	두 다리중 한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되고 다른 발이 상실된 자
	502	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2급에 해당하는 자
3급	2	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이 상실된 자
	5	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
	13	한 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
	15	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.1이하인 자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.06이하인 자
	17	두 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
	18	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9	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
	20	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
	22	한 팔과 한 다리가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23	두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24	두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27	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31	한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
	33	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
	72	한 팔이 손목관절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 쪽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78	한 팔이 팔꿈치이하에서 상실되고 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81	두 발이 상실되고 한 팔의 팔꿈치관절이하가 상실된 자
	82	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
	83	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
	84	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86	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
	89	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손상으로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
	503	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3급에 해당하는 자
4급	106	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경미한 노무에도 어려움이 많은 자

	107	두부손상 후유증으로 공동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자
	108	한 팔이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전박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
	109	한 다리가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상실되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자
	110	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이고 시야위측이 중심 15도이하이거나 반맹성 시야 협착이 있는 자
	111	한 팔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12	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13	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14	음식물 씹는 기관 및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504	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
5급	21	뇌골부상 후유증으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
	25	한 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
	26	한 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상실된 자
	28	한 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29	한 다리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41	두 발이 상실된 자
	45	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자
	73	한 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77	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91	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
	92	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93	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94	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95	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96	얼굴이 현저하게 변형되었거나 심한 추상이 있는 자
	505	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
6급 1항	12	생식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
	35	한팔이 팔꿈치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36	한다리가 무릎관절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38	두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47	한쪽 수장부 또는 발이 상실된 자
	48	한손의 다섯손가락이 상실되거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손가락이 상실된 자
	115	한팔의 팔꿈치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
	116	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현저한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
	117	척추부상으로 현저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18	음식물 씹는 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심한 자

	119	양쪽 발가락이 완전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
	120	한팔의 3대관절중 2대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21	한다리의 3대관절중 2대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22	신경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
	123	한눈의 교정시력이 0.02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.4이하인 자
	124	한눈이 적출 또는 황폐된 자
	125	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26	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27	한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자
	128	두눈의 시야협착이 심한 자
	129	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된 자
	130	두손의 엄지손가락이 상실된 자
	131	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132	코가 손상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
	506	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6급1항에 해당하는 자
6급 2항	16	한팔의 팔꿈치 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
	30	한다리의 무릎관절이하 또는 이상에서 경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
	32	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
	34	음식물 씹는기관 또는 음성기관에 부분적 기능장애가 있는 자
	37	양쪽 발가락이 불완전 상실된 자
	39	한팔의 3대관절중 2대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
	40	한다리의 3대관절중 2대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
	42	정신장애로 경이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
	43	흉복부 장기의 부상으로 부분적인 기능장애가 있는 자
	44	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
	46	한눈의 교정시력이 0.05이하이고 다른눈의 교정시력이 0.5이하인 자
	49	한쪽수장부 또는 발의 기능이 상실된 자
	51	한눈이 광각만 있는 자
	52	한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53	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
	54	한팔이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자
	55	언어장애가 있는 자
	56	두눈의 반맹증,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아 있는 자
	57	열손가락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손가락 이상이 상실되거나 경직된 자
	58	두손의 엄지손가락이 불완전 상실되거나 그 기능이 상실된 자
	59	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
	60	양쪽 발가락중 다섯발가락이상이 상실된 자
	61	두눈의 눈꺼풀이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
	62	코가 손상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장애가 남아 있는 자

	64	한손의 다섯손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
	65	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
	67	한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자
	69	두팔의 팔꿈치관절이 90도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
	70	두다리의 무릎관절이 90도이상 굴신이 불가능한 자
	71	늑골 6본이상이 제거된 자
	74	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
	75	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 상실된 자
	76	음성이 작아서 40센티미터이상에서 말소리를 해독하기 곤란한 자
	80	비장 또는 한쪽 신장이 상실된 자
	85	두눈 안구의 작용이 곤란한 자
	87	두귀가 상실된 자
	88	쇄골, 흉골 및 견골이 경직된 자
	90	얼굴에 추상이 남아 있는 자